

북한의 은행관련법 개정과 금융개혁

박 은 진(통일사업부, jeshigh@kdb.co.kr)

- ◆ 북한은 '15년 7월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은행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사(私)금융의 공(公)금융화를 추진하고 있음
- ◆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역할 확대를 통한 이원적 은행체제를 구축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제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중이나 근본적 금융개혁으로 보기는 어려움

□ 북한은 '04년 9월 「중앙은행법」을, '06년 6월 「상업은행법」을 제정한 후 '15년 7월 처음으로 개정함으로써 은행의 역할 확대를 모색

- 이번 개정은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되는 경제개발구 지정, 시장화 현상 등 북한식 개혁의 일환으로, 북한 경제에서 은행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것
-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범위가 확대된 것은 이원적 은행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과거 사회주의국가의 은행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기능을 겸하는 일원적 은행체제였으나 체제전환과정에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이 분리되는 이원적 은행체제를 채택함

□ 북한의 중앙은행법 개정은 조직명칭 변경, 중앙은행 역할 확대, 금융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

- (이사회 구성원 확대) 은행이사회 구성원으로 각 해당기관의 필요 성원을 포함
- (중앙은행 역할 확대) 화폐가치 안정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화폐매매를 허용하고 기준환율 제정·조정권을 중앙은행에 부여
- (금융투명성 제고) 금융기관은 금융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북한 중앙은행법 개정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중앙은행리사회) 중앙은행은 금융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비상설로 은행리사회를 둔다. 중앙은행리사회는 리사장, 리사들로 구성한다.	제10조(은행리사회의 조직) 국가는 금융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비상설로 은행 리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은행리사회는 리사장, 리사와 해당 기관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은행리사회의 실무보장은 중앙은행이 한다.
제29조(화폐의 팔고사기) 중앙은행은 화폐류통을 조절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제29조(화폐의 팔고사기) 중앙은행은 화폐류통을 조절하고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제30조(기준리자률의 제정) 기준리자률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리자률 범위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대부 리자률과 예금리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0조(기준환율, 리자률의 제정 및 조정) 기준환율, 리자률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환율, 리자률 범위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환율과 리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5조(금융정보의 교환)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금융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며 제때에 중앙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금융정보의 교환)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금융과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며 제때에 중앙은행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북한의 상업은행법 개정은 취급 업무 확대, 거래자 편의 증대 등의 내용을 포함

- (취급 업무 확대) 상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로 은행카드 업무를 신설
- (거래자 편의 증대) 기존에 은행 거래자는 하나의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계좌)만 개설할 수 있었으나, 하나의 은행에 다수 계좌 개설을 허용
- (부당 거래 처벌) 다수 계좌 개설 허용에 따른 부당 계좌 개설에 대한 벌금형 신설

북한 상업은행법 개정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상업은행업무종류) 상업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 12.	제18조(상업은행업무종류) 상업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 13. (12. 은행카드업무)
제30조(돈자리의 개설) ~ 거래자는 한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 개인의 돈자리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예금할 수 없다.	제30조(돈자리의 개설) ~ 거래자는 한 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 (삭제)
제53조(벌금) 벌금을 물리는 경우 다음과 같다. 1. 부당하게 예금을 받아들였거나 대부를 주었을 경우 5. 정한 봉사료금을 적게 또는 초과하여 받았거나 받지 않았을 경우	제53조(벌금) 벌금을 물리는 경우 다음과 같다. 1. 부당하게 돈자리를 개설해주었거나 예금을 받아들였거나 대부를 주었을 경우 5. 금융봉사료금을 정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 (평가 및 전망) 북한 은행법 개정은 시장화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나, 이를 체제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금융 개혁으로 보기에는 무리

-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화폐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
 - 시장화로 인해 시중에 유틸화폐가 급증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 화폐매매권, 기준환율 조정권 부여
 - 사(私)금융을 공(公)금융화하기 위해 상업은행의 업무를 확대하고 거래 편의성 제고
 - 몰수형 화폐개혁으로 인해 은행을 벗어난 시중의 유틸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상업은행법상 단일계좌의무를 폐지하고 직불카드 업무*를 도입
- * 김천균 북한 조선중앙은행 총재의 인터뷰('15.2.3, 조선신보)에 따르면, 국내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새 금융상품 개발'과 '인민생활영역에서 카드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일반적으로 이원적 은행체제로의 전환은 중국 등 체제전환국의 사례에서 보면 금융개혁의 출발점이지만, 북한의 이번 개정은 체제전환을 위한 근본적 금융 개혁으로 보기에는 무리
 - 전국 단위 상업은행의 미출현, 고정재산 등록의무 등의 제한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이번 개정을 체제전환의 시그널로 보기는 어려움